

영등포구의회  
제18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 
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3. 5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2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주민 편의성과 부담 경감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'14.7.8.시행)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된 규정을 보완·신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% 초과 상승분에서 5% 초과 상승분으로 확대(안 제32조)
- 나.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함.(안 제90조의2)

다.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(안 제4조2항, 제27조제4항제9호,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, 제36조제4항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‘법’)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‘시행령’)의 개정(2014.7.8.시행)에 따라,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증진과,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,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·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, 기타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7조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(‘14.4.24 시행)되어, “서울형

사회적기업”이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(1,000분의 10)대 상에서 제외되고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“사회적협동 조합”이 포함되었으며

- 안 제30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근거법령인 「외국인 투자 촉진법」 인용조항을 정정하였으며,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상인 교육·연구시설<sup>1)</sup>을 열거하였던 「시행령」 제 30조제2항이 삭제('14.7.7)되어, 교육·연구시설을 직접 조례에 명문화하여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하였으며,
-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% 초과 상승분에서 5%초과 상승분으로 확대 하였으며
- 안 제90조의2는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채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함.

○ 금번 개정조례안 핵심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을 반영하여, 현행 조례의 규정상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

---

1) 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 
② 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조사·연구·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

대부료보다 ‘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’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, ‘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’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의 완화를 통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제도는 변상금의 감액·감면 조항이 아니며, 징수를 1년 동안만 연기해 주는 것으로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바,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시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2)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음.

- 
- 2) 1.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  - 2.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
  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
  - 4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

# 참 고 자 료

##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23조(사용료의 조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(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)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·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(減額)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7.>

**제33조(대부료의 조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(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)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7.>

**제81조(변상금의 징수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(사용·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·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"무단점유"라 한다)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변상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7.>

## 2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16조(사용료의 조정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7.7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**제34조(대부료의 조정)**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7.7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### 제81조(변상금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. <신설 2014.7.7.>

1.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
4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7.7.>

[전문개정 2009.4.24.]